

미혼세(Bachelor Tax) 담론의 역사적 고찰과 함의

— 오스만 제국과 튀르키예 제도를 중심으로 —

이 창 규*

■ 목 차 ■

I. 서(序)	89	IV. 우리나라에의 시사(示唆)	109
1. 연구 목적 및 배경		1. 인구 위기 담론과 미혼세 논쟁의 배경	
2. 선행 연구 검토		2. 미혼세의 한계와 포괄적 인구 정책의 필요성	
II. 미혼세의 역사와 오스만 제국에서의 특성 ..	92	3. 미혼세 도입 논의의 헌법적 쟁점과 실천 가능성	
1. 미혼세 역사		V. 결(結)	118
2.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 분석			
3. 소 결			
III. 튀르키예 미혼세 논쟁의 전개와 함의	102		
1. 미혼세의 사회적 논쟁			
2. 미혼세 논쟁과 인구 정책			
3. 소 결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전담교수 / 법학박사 / 기술거래사

** 투고일 : 2025. 6. 30. 1차수정일 : 2025. 7. 21. 게재확정일 : 2025. 11. 6.

<국문초록>

미혼세(resm-i mücerret, 레스미 뮤체르렛)는 역사적으로 인구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시행되어 왔다. 이 글은 미혼세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특히 오스만 제국과 튀르키예 공화국이라는 두 시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인구 문제에 대한 비판적 통찰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는 명칭과 달리 인구 증가보다는 재정 수입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세액이 매우 낮았고, 지역별 부과 기준이 상이했으며, 혼인 후 오히려 세액이 증가하는 규정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는 인구학적 목표보다는 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반면,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의 미혼세 도입 시도는 경제적 실효성 부족, 인구 감소의 구조적 원인 인식,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 및 성 역할 갈등 심화 우려 등으로 좌절되었다. 이 사례는 미혼세와 같은 단편적·징벌적 조세 정책이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를 지니며, 오히려 사회적 반발·경제적 불평등·젠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현대 사회의 인구 문제 해결은 주거 안정, 고용 개선, 양육 부담 완화, 성평등 실현 등 포괄적 사회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두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인구 문제를 단순 조세 정책으로 접근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주제어 : 미혼세, 오스만 제국, 튀르키예, 인구 정책, 저출산, 조세

I . 서(序)

1. 연구 목적 및 배경

조세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그 원천, 대상, 금액, 그리고 세율에 따라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일부 조세는 개인의 혼인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 여부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미혼세(bachelor tax)이다.²⁾ 미혼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부터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시기에는 독신을 유지하는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³⁾ 이러한 미혼세는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권에서 그 존재를 드러냈다. 미혼세는 특정 시대와 문명권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으나, 각 사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도입 목

1) 홍석구 · 김다린, “세금과 저출산 미혼세”, 『더스coop』 제598호, The scoop, 2024, 28 ~29면.

2) Bachelor의 의미는 중세 시대에는 젊은 기사의 의미를 가졌으며, bachelor-at-arms 또는 knight bachelor로, 아직 자신의 군대를 이끌 만큼 충분히 지위나 재산을 갖추지 못한 젊은 기사를 의미했다. 13세기부터 “bachelor”는 대학에서 가장 낮은 학위를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가령, Bachelor of Arts가 그 예사이며, 일정 과정을 마쳤지만 아직 완전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했다. Maurice Keen, *Chivalry*,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67~68.

3) Şahin YEŞİLYURT, THE NIGHTMARE OF BACHELORS : DEBATES ON THE BACHELOR TAX IN THE EARLY YEARS OF THE TURKISH REPUBLIC, *Academic Review of Economics and Administrative Sciences* Vol. Iss. 15(3), Niğde Ömer Halisdemir University, 2022, p.665.

적, 과세 방식,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글은 다양한 미혼세의 역사적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오스만 제국과 튀르키예의 미혼세 관련 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오스만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민족, 다종교 사회를 포괄하는 독특한 지배 체제를 유지했으며, 그 안에서 인구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졌다.⁴⁾ 이 과정에서 미혼세가 어떻게 논의되고 적용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과거의 인구 정책과 조세 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⁵⁾

우리나라에서 미혼세는 2000년대 중반 저출산 정책 담론이 본격화된 이후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논의에 그쳤다.⁶⁾ 이러한 미혼세 논의의 주된 목적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 증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는 미혼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미혼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⁷⁾ 이에 대한

4) Şahin YEŞİLYURT, *op. cit.*, pp.664~665.

5) 오스만 제국은 튀르키예의 전신이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에 설립되어 1922년에 멸망한 광대한 이슬람 제국으로, 현재의 튀르키예와 발칸 반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르는 넓은 영토를 지배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었고, 이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중심으로 한 튀르키예 독립 전쟁을 거쳐 1923년 10월 29일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자리에 세워진 후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조윤수, 『오스만 제국의 영광과 쇠락, 튀르키예 공화국의 자화상』, 대부동, 2022, 211면.

6) 파이낸셜 리뷰, “[역사속 경제리뷰] 독신세”, 2024. 6. 12.,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80>(검색일 : 2025. 8. 8.).

7) OECD는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OECD, *Korea's Unborn Future : Understanding*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오스만 제국과 튀르키예에서 도입되었던 미혼세의 역사적 사례를 분석해, 현대 사회에서 논의되는 미혼세 정책에 대한 역사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스만 제국과 튀르키예의 미혼세는 인구 증가 및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 글에서 검토하는 역사적 사례들이 미혼세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오스만 제국과 튀르키예에서 미혼세가 어떻게 도입되고 변모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각 시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미혼세가 지녔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미혼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서구의 고대 로마 사례나 20세기 초중반 파시스트 정권에서 인구 증대 및 특정 이데올로기적 목적으로 활용된 미혼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혼세의 도입 배경, 과세 방식,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며 조세가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 역사적 맥락을 조명하였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resm-i mücerret* · 레스미 뮤제르렛, 이하 ‘미혼세’)¹와 같이 특정 문명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미혼세가 어떻게 논의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학계에서는 미혼세에 대한 학술 연구 문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간헐적으로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미혼세가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단편적인 논평이나 의견 표명에 그쳤을 뿐, 미혼세의 역사적 배경, 다양한 사례 분석,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 담론에서 조세 정책의

¹ *Low Fertility Trends*, 2025, p.10.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아직 미흡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특정 문명권의 미혼세 사례인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와 현대 튀르키예의 미혼세 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혼세에 대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확장하고자 한다.

II. 미혼세의 역사와 오스만 제국에서의 특성

1. 미혼세의 역사

가. 역사적 배경과 초기 형태

독신자에 대한 과세는 인구 증대와 재정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 온 재정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혼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특정 행위를 장려하거나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내포한다. 독신 남성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Plato, 기원전 428~347년)의 문헌에는 독신 남성에게 연간 추가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하며, 이는 독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해석된다.⁸⁾

약 4세기 후,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Imperator Caesar Divi Filius Augustus) 황제는 이러한 요구를 실제로 법제화하여 시행하였다.⁹⁾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조세 정책은 혼인 여부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인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혼인했거나 최소 세 자녀를 둔 집단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부

8) 홍석구·김다린, 앞의 논문, 28~29면.

9) John Gilbert McCurdy, *Citizen bachelors : manhood and the creation of the United States*,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p.59.

여하고, 독신이거나 자녀가 없는 집단에게는 불리한 차등 과세를 적용하였다. 이는 고대 로마가 제국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인구 증대를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¹⁰⁾ 이처럼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미혼세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인구 증대와 사회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고대 서구 사회에서 미혼세가 존재했듯이, 동방의 오스만 제국(Sublime Ottoman State) 또한 재정 시스템에 미혼세, 즉 미혼세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오스만 제국의 조세 체계는 미혼세 외에도 담배세(tütün resmi · 튜따 레스미, 이하 ‘담배세’), 신부세(arus resmi · 레스미 아루스, 이하 ‘신부세’), 혼인신고세(nikah resmi, 니카 레스미) 등 개인의 혼인 상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세금들은 고대 로마의 미혼세와 유사하게,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의 가족 중심적 구조를 유지하려는 오스만 제국의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다.¹¹⁾ 이는 혼인 상태에 따른 과세가 특정 문명권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 문제와 국가 재정이라는 보편적인 통치 과제에 대한 역사적 해법으로 폭넓게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뿌리 깊은 시행 역사를 가진 미혼세는 민족 국가 이념이 확산되고, 베니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와 같은 파시스트 통치자들이 집권했던 20세기 초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¹²⁾ 이 시기에는 국가의 역량이 곧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는 인식이 지배

10)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혼인 및 출산 장려법(*lex Julia de maritandis ordinibus, lex Papia Poppaea*)과 그에 따른 세제상 혜택, 미혼·무자녀자에 대한 불이익(상속권 제한, 세금 등)이 있었다. Richard I. Frank, *Augustus' Legislation on Marriage and Children*, *California Studies in Classical Antiquity* Vol. 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p.41~60.

11) Wikipedia, “Bachelor tax”, https://en.wikipedia.org/wiki/Bachelor_tax(last visited June 30, 2025.).

12) Enrico Rubolino, “For (Un)Love or (of) Taxes? How Taxing Bachelors Empowered Women”, December 24, 2024, Available at SSRN : <https://ssrn.com/abstract=5070333>

적이었으므로, 해당 정부들은 미혼세를 조세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 인구 증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오스만 제국을 거쳐 근대 민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미혼세가 인구 증진과 국가적 강성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 흐름이다.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초기에도 미혼세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세금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이 보조크(Bozok) 출신 술레이만 스르(Süleyman Sirri) 의원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여 미혼세는 튀르키예 조세 시스템에 정식으로 도입되지 못하였다.¹³⁾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혼세가 튀르키예 조세 시스템에 명시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시행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1949년 소득세법 제90조에서는 독신자에게 5%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미혼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었다.¹⁴⁾ 또한, 튀르키예 조세 시스템에는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혼자를 지원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미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혼세가 튀르키예 조세 시스템에 편입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제안될 당시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때로는 풍자적인 어조로 이 세금 제안에 대한 중요한 기사들이 쏟아졌다.¹⁵⁾ 이러한 기사들은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칼럼니스트들, 그리고 이 세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었다. 나아가, 당시 신문들은 게재된 만평을 통해 미혼세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반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튀르키예 조세 시스템에서의 미혼세 적용에 대한 논쟁은 학

or <http://dx.doi.org/10.2139/ssrn.5070333>(last visited July 17, 2025.).

13) Şahin YEŞİLYURT, *op. cit.*, p.670.

14) *Ibid.*, p.664.

15) *Ibid.*, pp.665~666.

제보다는 주로 언론에서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제가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가끔 등장하는 미혼세의 시행이 지닌 난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혼세가 논의될 때마다 미혼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세금의 시행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과거에 미혼세가 시행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 및 경제 활동 참여 증대, 개발도상국의 경제 문제, 그리고 기타 개인적·사회적 요인 등 혼인을 자연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이 모든 요인들은 혼인을 유보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혼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유권자 집단이 되면서 해당 세금을 실제로 시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 20세기 파시스트(fascist) 정권의 활용

독신자 및 자녀 없는 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러한 조세 정책은 이후 시대에도 지속되었다. 1695년에 이르러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는 독신 남성에게 독신이라는 이유로 미혼세를 부과했다.¹⁷⁾ 물론, 독신에 대한 남성 과세 관행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에서 아르헨티나, 미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독신자들이 이 세금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말 쿠바는 독신이라는 이유로 모든 독신자에게 10달러의 인두세를 책정했다. 20세기 중반까지 존속했던 미혼세는 베니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니콜라에 차우셰스쿠(Nicolae Ceaușescu), 아돌프 히틀러

16) 송유미·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8~29면.

17) Wikipedia, *op. cit.*

(Adolf Hitler)와 같이 이 시기 파시스트 통치자로 불린 인물들에 의해 각국의 재정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¹⁸⁾

예를 들어, 무솔리니는 1927년 5월 연설에서 이탈리아 인구 증가 문제를 인구 전쟁으로 간주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세 정책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에 미혼세 시행을 희망했던 또 다른 국가는 그리스였다.¹⁹⁾ 그리스 정부는 30세에서 55세 사이의 미혼자들에게 이 세금을 징수하고자 했다. 실제로 1937년 아나돌루(Anadolu)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에서는 미혼세를 부과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25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해당 법은 상속 불능, 사망 시 재산의 정부 귀속, 독신 공무원의 근무권 박탈 등 독신을 유지하는 자에 대한 여러 제재를 포함하였다.

소련(Soviet Union)은 1941년에 미혼세를 도입하였는데, 초기에는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였고 이후에는 국가가 모성 및 자녀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²⁰⁾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이유로 혼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한 자녀만 있는 시민에게 부과되었다. 반면, 소련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영웅적인 어머니’와 같은 칭호를 활용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금의 시행에 일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세는 소련에서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다. 더욱이, 소련 해체 이후 21세기 초반인 2012년 우크라이나와 2017년 러시아에서 미혼세는 다시금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독신자 과세의 배경을 고찰해 보면,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했다.²¹⁾ 첫째, 독신자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이 국가 재정에 상당한 기여

18) Şahin YEŞİLYURT, *op. cit.*, p.664.

19) John F. Pollard, *The Vatican and Italian Fascism, 1929 - 32 : A Study in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80~81.

20) Michael S. Teitelbaum and Jay M. Winter, *The Fear of Population Decline*, Academic Pr, 1985, p.42.

21) Le Roy Barnet, *The Attempts to Tax Bachelors in Michigan*, *HSM Chronicle*,

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둘째, 과거의 격렬한 전쟁은 남성 인구 감소를 야기 했고, 이에 따라 사회 인구 증가, 나아가 남성 전사 수 증가를 위해 미혼세가 도입되었다. 셋째, 전쟁으로 사망한 남성들은 미망인을 남겼다. 이러한 미망인들의 재혼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다. 미망인들이 재혼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했고, 이는 공공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혼세는 국가에 공공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결혼을 강제함으로써 공공 지출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이 혼인을 권장한 이유는 혼인하여 자녀를 둔 개인이 가족,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신자는 이기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 자녀를 둔 기혼 가족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독신자에 비해 높을 수 있다고 여겨졌다.²²⁾

2.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 분석

가. 목적과 특징

다양한 시대와 국가에서 미혼세는 인구 증가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에서의 미혼세 부과 동기는 다른 국가들과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오스만 제국은 인구 정책적 목적보다는 재정 수입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미혼세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스만 공공 재정 체계에서 미혼세는 토지세(resm-i gift, 레스미 치프트, 이하 ‘토지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기능하였다. 토지세는 오스만 제국 조세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세금으로, 주로 기혼자가 소유한 경작 가능한 토지에 부과되

Historical Society of Michigan, 2013, pp.18~19.

22) Marjorie E. Kornhauser, The Rhetoric of the Anti-Progressive Income Tax Movement : A Typical Male Reaction, 86 *Mich. L. Rev.* 465, The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1987, p.471.

었다. 반면 미혼세는 이러한 토지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녔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독신 아들을 둔 가구에 추가적으로 부과되었다. 결과적으로 미혼세의 본질적 목적은 결혼 장려가 아니라 재정 수입 확보에 있었으며, 납부자가 결혼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의 토지세로 전환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띠었다.²³⁾

토지세는 약 60~150에이커(acre), 즉 두 마리 소로 경작 가능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기혼자가 납부해야 하는 토지세를 의미한다.²⁴⁾ 참고로 60에이커는 축구장 약 30~4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만일 기혼자가 두 마리 소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의 절반가량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는 토지세(resm-i bennak, 레스미 벤낙, 이하 ‘다른 토지세’)라는 또 다른 토지세를 납부하였다.²⁵⁾ 이 다른 토지세는 토지 소유 규모가 부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다시 두 하위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에키널뤼 벤낙(ekinlü bennak)이라는 다른 토지세의 하위 유형은 납부 대상자 중 실제로 해당 토지를 경작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에 부과되었다.²⁶⁾ 이는 단순한 토지 소유를 넘어 실질적인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세목이다. 둘째, 자바 벤낙(caba bennak)이라는 다른 토지세의 하위 유형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상태

23) 토지세(resm-i çift)는 오스만 제국 조세의 기본 중추였으며, 주로 기혼자가 소유한 경작 가능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미혼세(resm-i mücerret)는 이 토지세(resm-i çift)의 보완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주로 특정 조건을 갖춘 독신 아들을 둔 가구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수입 창출 목적의 세금이었다. 미혼세의 목적은 결혼 장려가 아닌 재정 수입 확보에 있었으며, 미혼세 납부자가 결혼하면 더 높은 토지세로 전환되어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Marjorie E. Kornhauser, *op. cit.*, p.667.

24) 참고로 60에이커(acre)는 축구장 약 30~40개를 합쳐 놓은 정도의 넓이다.

25) 주로 두 마리 소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절반 정도만 소유한 기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Marjorie E. Kornhauser, *Ibid.*, p.667.

26) 에키널뤼 벤낙(ekinlü bennak)은 ‘resm-i bennak’을 납부하는 대상 중에서도 실제로 토지를 경작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즉, 토지 소유와 더불어 그 토지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Ibid.*, p.667.

이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목이다.²⁷⁾ 즉, 에키널뤼 벤낙과 달리 실제 경작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과세 대상자가 20세 이상의 독신 아들을 동반하고, 그 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들에게 독신을 기준으로 토지세가 부과되었다. 다만, 이 경우의 세액은 일반적인 토지세 또는 다른 토지세 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징수 금액은 행정 구역별로 상이하였다. 특히, 오스만 제국의 영토 내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세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²⁸⁾ 오스만 제국이 미혼세를 부과한 목적은 독신자에 대한 처벌이나 혼인 장려에 있지 않았다. 이는 미혼세를 납부하던 자가 결혼할 경우 소유 토지의 규모에 따라 토지세 또는 다른 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⁹⁾ 다시 말해, 결혼 이후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두 토지세의 세율은 미혼세보다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15세기 기준으로 미혼세가 6 아크체(*akçe*)로 징수된다면 비해, 토지세는 22~100 아크체, 토지세는 6~18 아크체 범위에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³⁰⁾ 이러한 수치는 혼인 여부에 따라 납세 항목과 그 규모가 변화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더욱이, 지역별로 미혼세의 적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독신자에게 미혼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과세 연령의 설정 또한 달랐다.³¹⁾

27) 자바 벤낙(*caba bennak*)은 ‘resm-i bennak’을 납부하는 대상 중에서도 토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휴경), 혹은 다른 형태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에키널뤼 벤낙(*ekinlü bennak*)과는 달리 경작 활동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Marjorie E. Kornhauser, *op. cit.*, p.667.

28) *Ibid.*, p.667.

29) *Ibid.*, p.667.

30) 아크체(*akçe*)는 오스만 제국 시대에 사용된 은화(silver coin) 단위를 가리킨다.

31) Marjorie E. Kornhauser, *Ibid.*, p.668.

나. 독자적 성격

앞서 논의한 세금들은 오스만 제국의 공공 재정 시스템에서 무슬림 인구를 대상으로 징수된 항목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비무슬림 인구로부터 혼인 상태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는 토지세[*ispenc*, 이스펜치, 이하 ‘토지세(*ispenc*)’]가 있었다. 토지세(*ispenc*)는 비무슬림 기혼 농민에게 부과되던 세금으로, 무슬림에게 적용된 토지세와 달리 세분화된 차등 구조를 갖추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징수되었다.³²⁾ 이와 별도로, 비무슬림에게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25 아크체(*akçe*)가 인두세로 부과되었다. 또한, 오스만 제국에서는 혼인 상태에 따라 징수되는 또 다른 세금으로 담배세가 존재하였다.³³⁾ 이 세금은 기병의 토지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를 대상으로, 주로 겨울 숙영 기간 동안 징수되었으며, 기혼자에게만 6 아크체가 부과되었고 독신자는 면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혼세와 담배세의 적용 방식이 오스만 제국에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는 다른 국가에서 시행된 미혼세와 달리 인구정책적 목적보다는 재정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혼인과 관련된 또 다른 세금으로는 신부세가 있었다.³⁴⁾ 이들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불문하고 기혼 여성에게 부과되었으며, 혼인 의식 시 일종의 수수료로 납부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스만 제국의 혼인 관련 세금은 단순히 혼인을 장려하거나 독신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부과된 재정적 의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스만 제국에서 미혼세가 시행된 배경이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공공 재정 시스템의

32) 토지세(*ispenc*)는 오스만 제국에서 비무슬림 기혼 농민에게 부과되던 토지세로, 무슬림에게 부과되던 토지세(*resm-i çift*)처럼 복잡하게 세분화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징수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Marjorie E. Kornhauser, *op. cit.*, p.668.

33) *Ibid.*, p.668.

34) *Ibid.*, p.668.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과세 장치였음을 보여준다.

3. 소 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파시스트 정권에 이르기까지, 미혼세는 인구 증가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20 세기 초 파시스트 국가들은 국력 신장과 인구 증대를 위해 미혼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독신자에게 차등적인 조세를 부과하거나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에도 미혼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식 채택되지는 못했음에도, 독신자에 대한 추가 소득세 부과나 기혼자 지원 정책에서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미혼세 논의가 재점화되기도 하나, 경제 발전,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개인주의 심화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로 인해 그 시행은 여전히 난관에 봉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는 여타 국가들과는 상이한 목적과 특징을 보였다. 즉, 오스만 제국은 인구 증대보다는 재정 수입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미혼세를 도입하였다. 이는 미혼세가 기혼자에게 부과되는 주요 세금인 토지세의 보완적 성격으로 기능했으며, 그 액수 또한 토지세 및 다른 토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고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미혼세 납부자가 혼인 시 더 높은 세금인 토지세 또는 다른 토지세를 납부하게 되는 구조는 미혼세가 혼인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에게도 혼인 상태에 따라 부과된 토지세, 담배세, 결혼 의식과 관련된 신부세 및 혼인증명서 세금 등 오스만 제국의 다양한 조세 제도를 통해 미혼세의 독자적 성격이 부각된다. 이러한 세금들은 다른 국가들의 미혼세와 달리 혼인 장려보다는 공공 재정 시스템 내에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는 보편적인 인구 정책적 목적보다

는 제국의 독특한 재정 시스템과 사회 구조 속에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었던 세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튀르키예 미혼세 논쟁의 전개와 함의

1. 미혼세의 사회적 논쟁

가. 미혼세 논쟁 배경

1920년대 후반 튀르키예 공화국에서 미혼세 도입 논의가 제기된 배경에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시기는 オス만 제국의 해체와 공화국 수립이라는 정치적 변동과 함께,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시기였다.³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금 제도를 모색했으며, 미혼세 역시 이 과정에서 제안되었다. 미혼세의 도입 목적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결혼과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에도 있었다. 이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족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사회적 의무로 여겨졌고, 독신은 일종의 책임 회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한편, 튀르키예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의 주도 아래 서구식 근대화, 세속화, 여성 권리 신장, 문자 개혁 등 광범위한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³⁶⁾ 1929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국가 주도 경제

35) Ayhan Aktar, *Economic Nationalism in Turkey : The Formative Years, 1912–1925, Boğaziçi Journal, Review of Social and Administrative Studies* Vol. 10/1-2, Boğaziçi University, 1996, pp.271~272.

36) Erik J. Zurcher, *Turkey : A Modern History*, I.B.Tauris, 2004, pp.312~313.

정책인 에타티즘(étatism)을 강화하고, 소비재에 대한 간접세 등 다양한 세금 제도를 도입하였다.³⁷⁾ 미혼세 논의 또한 이러한 경제 재편과 재정 확충 맥락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제안은 당시 사회 규범과 충돌하며 논란을 불러왔다. 일부 언론은 미혼세가 위장 결혼을 조장할 수 있으며, 결혼 비용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할 때 도입이 어려운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1929년 미혼세 논의는 경제 위기 속 국가 재정 확충, 인구 증대, 가족 제도 강화, 결혼 장려라는 복합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³⁸⁾

비록 미혼세는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는 당시 튀르키예 사회가 근대화와 사회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³⁹⁾ 결혼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개인의 자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논쟁과 국가의 사생활 개입 시도가 동시에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초기 공화국 시대(1920~1940년대)에는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27년 1,360만 명이던 인구는 1945년 1,870만 명, 1950년 2,090만 명, 1960년 2,770만 명으로 증가했고,⁴⁰⁾ 1960년대에는 연간 3%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TFR) 6명이라는 높은 출생률을 기록했다.⁴¹⁾

나. 언론의 관심과 여론 형성

미혼세가 튀르키예 조세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1929년 당시 언론은 이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쿠후리예트(Cumhuriyet), 바

37) Şahin YEŞİLYURT, *op. cit.*, p.666.

38) *Ibid.*, p.666.

39) Ayhan Aktar, *op. cit.*, pp.263~290.

40) SEÇİL YILMAZ, “Intimate Technologies of Family Making : Birth Control Politics in Cold War Turkey”, 2024, pp.5~11, <https://preprint.press.jhu.edu/bhm/sites/default/files/2024-09/Yilmaz.pdf>(last visited July 17, 2025.).

41) *Ibid.*

키트(Vakit) 등 주요 일간지는 미혼세 찬반 논의를 다루는 기사와 만평을 게재하며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쿰후리예트 신문(1929년 3월 20일)은 독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개했고, 바키트 신문은 미혼세 공모전을 개최해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였다.⁴²⁾ 미혼세 찬성론자들은 기혼자들이 자녀 양육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반면 독신자는 그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며 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⁴³⁾ 그러나 일부 논평은 전통적 혼례 비용과 과도한 지역 관습이 결혼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세금 부과보다는 결혼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장 결혼과 세금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1929년 3월, 술태이만 시리 베이(Süleyman Sirri Bey) 의원은 25~45세 독신 남성과 25~35세 여성 공무원, 자녀 없는 과부에게 미혼세를 부과하고, 징수 세금의 25%를 다자녀 가구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⁴⁴⁾ 이러한 논의들은 미혼세가 단순한 재정 정책이 아니라 사회 규범, 성 역할, 인구 정책 전반에 걸친 복합적 논쟁을 촉발했음을 보여준다.

1929년 3월 20일자 쿰후리예트 신문은 미혼세 제안이 과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독신자의 다양한 의견을 촉발했다고 보도하였다. 베요글루 (Beyoğlu)의 결혼 담당관 우베이둘라 에펜디(Ubeydullah Efendi)는 미혼세의 실효성에 회의적이었으나 다자녀 가구 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였다.⁴⁵⁾ 일부 행정관은 세액의 크기보다 결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

42) 쿰후리예트(Cumhuriyet) 신문은 튀르키예어로 ‘공화국(Republic)’을 뜻하며, 이름처럼 튀르키예 공화국의 건국과 그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일간 신문이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오래된 세속주의 일간지이자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Şahin YEŞİLYURT, *op. cit.*, p.666 ; Cumhuriyet Newspaper, 20 March 1929, p.1.

43) 바키트(Vakit) 신문은 터키어로 시간 또는 때를 의미한다. 이 이름의 신문은 오스만 제국 말기와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에 발행된 여러 신문 중 하나로, 특히 종교적 보수주의 및 이슬람주의 성향을 대변했던 주요 언론 매체이다. Şahin YEŞİLYURT, *Ibid.*, p.666 ; Vakit Newspaper, 5 April 1929, p.1.

44) 튀르키예의 정치인으로,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정부와 2대 정부에서 공공사업부장관(Bayındırlık Bakanlığı)을 역임했다.

45) 베요글루(Beyoğlu)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주의 자치구이다.

을 지적하며, 법적 강제보다는 사회적 장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⁴⁶⁾ 당시 저명인사였던 베심 외메르 파샤(Besim Ömer Pasha) 박사는⁴⁷⁾ 미혼세가 보건 정책과 병행될 경우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⁴⁸⁾ 제브데트 (Cevdet) 변호사는 독신자의 유형에 따라 세금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 분석했다.⁴⁹⁾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미혼세가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결혼 장려, 성 역할,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와 얹혀 있었음을 보여주며, 결혼률 제고에는 세금 부과보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시사하였다.

2. 미혼세 논쟁과 인구 정책

1929년 튀르키예 대국민 의회에서 미혼세 법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쉴레이만 시리 베이 의원은 1931년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며 미혼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제안에서는 미혼세가 국가 재정보다는 낮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29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안 역시 반대에 부딪쳤으며, 반대론자들은 아동 사망률 감소와 같은 대체적 정책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했다.⁵⁰⁾ 쉴레이만 시리 베이의 제안은 재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처음에는 재정 위원회(Maliye Encümeni)에서 논의되었고, 이후 국가 인구 문제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내무 위원회(Internal Affairs Committee)로 회부되었다.⁵¹⁾ 언

46) Şahin YEŞİLYURT, *op. cit.*, p.670 ; Cumhuriyet Newspaper, 20 March 1929, p.3.

47) 베심 외메르 파샤(Besim Ömer Pasha) 박사는 오스만 제국 말기와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의 인물로 현대 의학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48) Şahin YEŞİLYURT, *Ibid.*, p.671 ; Cumhuriyet Newspaper, 21 March 1929, p.1.

49) Şahin YEŞİLYURT, *Ibid.*, p.671 ; Vakit Newspaper, 9 April 1929, p.1.

50) 악삼(Akşam)은 오스만 제국 말기와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에 창간되어 튀르키예 현대사에 걸쳐 발행되어 온 중요한 일간지 중 하나이다. Akşam Newspaper, 11 December 1931, p.2.

51) Şahin YEŞİLYURT, *Ibid.*, p.673 ; Akşam Newspaper, 16 March 1932, p.1.

론은 의회 내 논의 진행과 관련 성명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사회적 관심을 이어갔다. 그러나 1932년 4월 3일자 쿰후리예트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안을 최종 거부했다. 당시 약 18만 1천 명의 독신자 중 25세 미만과 장애 인을 제외하면 실제 과세 대상은 약 5만 명에 불과했고, 이 정도 규모로는 미혼세로 기대할 수 있는 재정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 거부의 주요 이유였다. 1931년 제안이 거부된 이후에도 미혼세 논의는 수년간 지속되었으며, 새로운 인구 조사 이후 도입될 수 있다는 소문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⁵²⁾

슐레이만 시리 베이 의원은 1940년에도 미혼세 도입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으나, 이번 제안 역시 언론과 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⁵³⁾ 나치 사돌라(Naci Sadullah)는 이 법안이 국가 경제나 혼인 및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비꼬며 비판했고, 세파에딘 카라낙치(Sefaeddin Karanakçı) 또한 인구 증가의 핵심은 자녀의 출생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⁵⁴⁾ 부르한 펠렉(Burhan Felek)은 미혼세가 ‘혜성처럼 이따금씩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앞선 비판을 지지했다. 그는 경제학자가 아님을 명시하면서도, 미혼세가 과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사회 집단을 처벌하는 성격을 띤다고 평가했다. 탄(Tan) 신문은 당시 이러한 논란을 상세히 보도하며, 미혼세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⁵⁵⁾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쉴레이만 시리 베이는 1944년에 또 다른 법안을 제출하며 미혼세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제안은 쿰후리예트 신문에 ‘다시 미혼세’라는 제목으로 논의되었으며, 세파에딘 카라낙

52) 울루살 비를리크(Ulusul Birlik)는 튀르키예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대변한 일간지이다. Ulusal Birlik Newspaper, 15 January 1935, p.4.

53) Şahin YEŞİLYURT, *op. cit.*, p.674 ; Tan Newspaper, 8 April 1940, p.2.

54) Şahin YEŞİLYURT, *Ibid.*, p.674 ; Cumhuriyet Newspaper, 16 October 1940, p.2.

55) 탄(Tan)은 튀르키예어로 ‘새벽’ 또는 ‘황혼’을 의미한다. 탄(TAN) 신문은 튀르키예 현대 언론사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일간지이다. Tan Newspaper, 19 April 1940, p.3.

치가 1940년 자신의 기사를 인용해 해당 법안이 왜 제정될 수 없는지 상세히 설명했다.⁵⁶⁾ 이처럼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의 미혼세 논의는 경제적 실효성, 인구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반복적으로 부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3. 소 결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에 제기되었던 미혼세 도입 논의는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당시 튀르키예 사회의 복합적인 인구 문제, 경제적 현실, 그리고 심화되는 사회적 가치관의 충돌을 반영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이었다. 비록 미혼세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튀르키예 조세 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했지만, 이 과정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정책 논의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언론의 역할, 정책 목표의 모호성, 그리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간과가 주요 실패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튀르키예 미혼세 논의에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여론 형성의 주요 주체로 기능했다. 언론은 미혼세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을 보도하고, 심지어 공모전을 개최하며 독자와 저명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긍정적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특정 관점의 부각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증폭시키는 양면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책 도입 초기 단계에서 언론의 역할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충분한 숙고 없는 공론화는 오히려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미혼세 도입의 주된 목적은 초기에는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재

56) Cumhuriyet Newspaper, 16 January 1944, p.2.

정 위원회와 내무 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에서 는 세금의 경제적 실효성 부족과 더불어 아동 사망률 감소, 생활비 문제 해결, 사회 복지 증진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 정책 대안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되었다. 이는 미혼세가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여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단편적인 접근 방식은 인구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한 것이었다. 즉, 정책 입안자들이 미혼세의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여성에게 미혼세를 부과하는 제안은 당시 사회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맞물려 큰 논란을 야기했다. 이는 특정 정책이 사회의 뿌리 깊은 가치관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저항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위장 결혼의 가능성이나 빈곤층에 대한 불균형적 영향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조세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도입 전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결국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 미혼세 논의는 인구 정책의 방향성, 조세 제도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입법자들은 단순한 인구 증대 목표를 넘어 실제적인 사회·경제적 현실과 민감한 사회적 가치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세가 반복적으로 부결된 배경에는 예상되는 재정 수입의 미미함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조세 정책만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관으로의 점진적인 이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일 정책 도입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복

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강제적인 조세 정책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지속 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우리나라에의 시사(示唆)

1. 인구 위기 담론과 미혼세 논쟁의 배경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국가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사회 활력 저하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혼세 도입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미혼세가 명시적으로 부과된 적은 없으며, 2014년 정부가 독신 가구에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혔을 때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다.⁵⁸⁾

미혼세는 혼인하지 않은 성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혼인 여부에서 찾고 혼인을 장려하며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실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

57)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2024. 8. 28. 보도자료.

58) 전병우,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조세연구』 제19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54~5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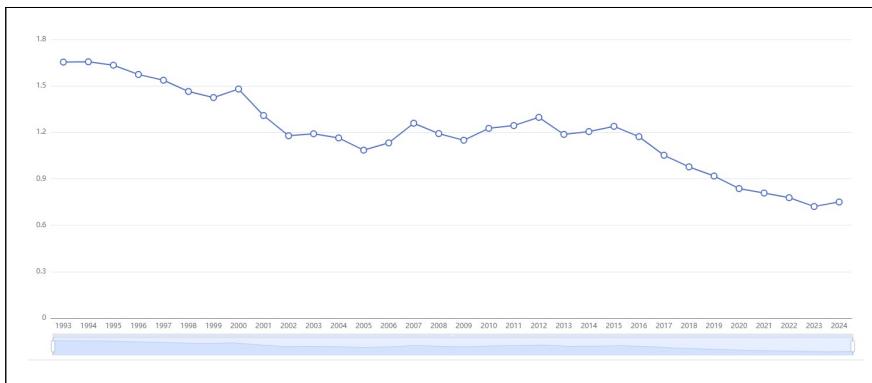
110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43호(제14권 제4호)]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혼세 논쟁은 단순한 세금 부과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 가족 가치관,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⁵⁹⁾

<표 1> 최근 10년간 출산 추이

(단위 : 가임 여성 1명당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출산율 (TFR)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78	0.721	0.75



자료 : 통계청(KOSIS), “합계출산율(TFR)”,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tatJipyoid=3760&vStatJiyoid=5257&listId=A_02&areaId=&areaNm=\(검색일 : 2025. 7. 15.\)](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tatJipyoid=3760&vStatJiyoid=5257&listId=A_02&areaId=&areaNm=(검색일 : 2025. 7. 15.)).

기혼 가구에는 연말정산,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되면서, 미혼 직장인이 동일 소득의 기혼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실질적 독신세’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소득 기준 독신 가구의 세 부담률(24.7%)은 외벌이 4인 가구(13.5%)보다 11.2%포인트 높다.⁶⁰⁾ 미혼세 논쟁은 2013년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회에서 처음 주목받았고, 2014년 정부가 독신 가구 세금 부과를 검토했으나 ‘징벌적 과세’

59) Enrico Rubolino, *op. cit.*, pp.1 ~3.

60) OECD, *Taxing Wages 2025*, 2025, p.23, p.29.

비판으로 중단됐다.⁶¹⁾ 최근 저출생 문제 대응으로 다자녀 가구 감세가 확대되자, 독신자·딩크족의 세 부담 증가 우려 속에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⁶²⁾ 미혼세 도입 지지 논거는 저출산 대책 재원 확보와 공동체적 책임 의식에 기반한다. 32~49세 독신 남녀에게 미혼세를 부과해 연간 약 5,500억 원을 마련하고 공공 보육 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⁶³⁾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미혼자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고령화로 청장년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혼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⁶⁴⁾

미혼세는 출산율을 높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세금 공제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싱글 가구는 자녀 양육 가구에 비해 공제 혜택이 적고, 어린 자녀 추가 공제는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⁶⁵⁾ 찬성론은 인구 위기를 국가적 생존 문제로 보고 개인의 선택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은 우선시한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므로 모든 국민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자녀 양육 가구의 희생과 미혼 가구의 상대적 부담 부족이 형평성 논쟁을 낳고, 이는 인구 정책이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논의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미혼세 반대 논거는 미혼층의 경제적 어려움, 징벌적 과세의 부

61) 거의 10여년 전인 2013년에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한경, “‘미혼이 범죄인가요’…연봉 3000만원 ‘싱글 직장인’ 분통”, 2025. 5. 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77406i>(검색일 : 2025. 7. 17.).

62) 한경, “‘억울하다’…날벼락 맞은 ‘나혼산’ 직장인들 부글부글”, 2025. 6. 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21011i>(검색일 : 2025. 7. 17.).

63) 관련한 주장은 2013년에 토론과 논의에서의 내용이다. 한경, 위의 기사(각주 61).

64) 동아일보, “저출산–고령화의 늪…2040년 2명이 일해 노인 1명 부양해야”, 2012. 6. 2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20623/47229128/1>(검색일 : 2025. 7. 17.).

65) 홍우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4, 7~8면.

당성, 정책 실효성 부족에 집중된다. 많은 미혼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경제적 여건이 결혼 불가의 핵심 사유로 지목된다.⁶⁶⁾ 이런 상황에서 미혼세는 취약 계층에 추가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결혼·출산 비용은 단순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세금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혼인율·출산율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가치관, 사회 분위기, 일·가정 양립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 좌우되므로, 세금 부과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육아 부담 등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세금으로 압박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대론은 인구 위기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특정 집단에 책임을 지우기보다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거나 근본적 사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다. 이는 저출산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어려운 환경의 결과라는 비판을 반영한다.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력 단절 문제는 세금이 아닌 성평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혼세는 단기 재원 마련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출산율 제고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⁶⁷⁾ 역사적으로도 미혼세는 고대부터 20세기까지 논의됐으나 효과는 의문시됐다. 튀르키예 사례처럼 강제적 조세만으로 혼인·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초저출산은 주거·고용 불안, 양육 부담, 성 역할 고정관념, 개인주의 확산 등 복합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미혼세 같은 징별적 정책은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성이 크다.

66)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4 결혼인식조사] 결혼은 필수? 선택? — 결혼 의향,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2024. 5. 28., <https://hrcopinion.co.kr/archives/29975> (검색일 : 2025. 7. 17.).

6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조성”, 2023. 3. 2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236> (검색일 : 2025. 7. 17.).

2. 미혼세의 한계와 포괄적 인구 정책의 필요성

미혼세는 혼인·출산 유도보다 독신자 반발과 사회 갈등을 키울 가능성 이 크다. 튀르키예 사례처럼 위장 결혼 등 도덕적 해이와 혼인 지연·포기 같은 역효과가 우려된다. 또한 특정 집단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개인의 삶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는 생계 곤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나아가 결혼 압박으로 해석돼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는 인구 증대보다는 재정 수입 확충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그 금액 또한 다른 기혼자 세금에 비해 낮았으며 혼인 시 더 높은 세금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졌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세는 기본적으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집단의 행위 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미혼세 와 유사한 형태의 조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목적이 순수하게 재정 수 입 확충에 있는지, 아니면 인구 정책적 유도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오스만 제국 사례처럼 인구 증대보다는 단순한 재정 보완책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정책적 명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혼세가 독신자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조세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독신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부재 등 간접적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명시적인 ‘미혼세’ 도입은 사회적 반발을 더욱 크게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긍정적 유인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튀르키예 사례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급여 인상 또는 기혼자 세금 인하 등의 긍정적 유인책이 논 의되었듯이, 우리 사회는 독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

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주택 구매 및 전세 자금 지원,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감, 의료비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 복지 및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튀르키예 논쟁에서 신생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산부인과 및 아동 보육 병원 설립, 그리고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복지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순히 혼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 모든 가구가 경제적 안정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 복지 시스템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결혼 유도를 넘어선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의미한다.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 언론은 미혼세 논쟁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오늘날 국내 사회에서 저출산 및 인구 위기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재고하게 만든다. 언론은 단순히 정책 제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안의 배경,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전문가 및 시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다루어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 징벌적인 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때, 언론은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의 미혼세 논쟁이 반복적으로 부결된 역사는 강제적인 조세 정책만으로는 복잡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교훈을 제공한다. 국내 인구 위기는 단순한 결혼·출산 부족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개인 삶의 변화가 얹힌 문제다. 따라서 미혼세보다는 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유연한 노동 환경, 공동 육아, 보편적 보육, 개인 선택 존중 등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튀르키예 사례는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도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3. 미혼세 도입 논의의 헌법적 쟁점과 실천 가능성

미혼세 도입 논쟁은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논의 되었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문제로 인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17조(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의 자유)과 같은 기본권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혼세는 특정 개인의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혼인하지 않은 국민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태의 차별적 조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⁶⁸⁾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⁶⁹⁾ 미혼세는 혼인 여부라는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조세 부담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미혼세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68) 혼인 상태에 따른 대우 차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더불어 평등권의 헌법상 구현에 관한 논문에서는 입법자의 평등 실현 의무와 자의적 차별 금지 원칙이 명확히 논의되어 있으며, 특정 개인(미혼자)에게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세는 자의적인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래용·김영심, “혼인 및 동거봉양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연구, 2011, 11~13면.

69) 김하열, “혼인 비혼 간의 차등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헌법은 혼인을 ‘특별보호’하는가”, 『헌법재판연구』 제9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 2022, 167~168면.

한다”고 명시한다. 혼인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세는 경제적 부담을 통해 개인이 혼인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거나, 최소한 혼인을 하지 않을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⁷⁰⁾ 이는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혼인 여부에 개입하여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미혼세 도입 논의에 있어 주목해야 할 선례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 결정이다.⁷¹⁾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와 가족생활의 보장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사안은 다르지만, 이 결정은 국가가 조세 제도를 통해 혼인한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혼인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례는 미혼세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역시 헌법 제36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위헌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⁷²⁾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가 혼인한 부부에게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움으로써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면, 미혼세는 미혼자들에게 혼인을 강제하거나 경제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혼인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세는

70) 김하열, 앞의 논문, 168면.

71) 부부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8헌바84,99헌바30 · 35(병합) 전원재판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72) 미혼세는 결혼을 강제하는 효과를 낳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즉,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의 핵심이 된다. 이재희,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한 혼인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18, 70~75면.

특정 성(젠더) 또는 사회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서의 차별적 조세가 될 수 있다.⁷³⁾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가장의 역할과 결혼에 대한 책임이 더 강조되었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미혼세는 남성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미혼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미혼세 도입은 단순한 재정 확보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는 기본권인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혼인의 자유와의 심각한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 결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 제도가 개인의 혼인 및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혼세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적, 사회학적, 윤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중요하나, 그 해결 방안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미혼세에 대한 논의는 그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적 합치성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73) 미혼세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사회적 통념상 남성은 가장으로서 결혼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성 역할 강요로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혼세는 여성에게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 충돌한다. 이기욱,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 · 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4, 126~127면.

V. 결(結)

조세는 인류 문명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진화하며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룸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개인의 혼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즉 미혼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권에서 인구 증가,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재정 확충이라는 복합적인 목적 하에 논의되고 때로는 시행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미혼세의 보편적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오스만 제국의 독자적인 미혼세 운용 양상과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 미혼세 도입 논쟁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이 현대 사회의 인구 정책 담론에 어떠한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미혼세가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조세 형태였음을 재확인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 증대와 사회적 책임 부과라는 징벌적 목적을 내포했던 미혼세는 20세기 파시스트 정권에 이르러 국력 신장과 인구 증가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는 국가가 인구를 단순히 통계적 수치로 여기는 것을 넘어, 국가 역량의 핵심 요소로 인식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 사례는 미혼세의 목적이 시대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에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를 통해 오스만 제국의 미혼세가 인구 증대보다는 재정 수입 확충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었음을 규명하였다. 이는 기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 지역별 편차, 그리고 혼인 시 세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독신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혼인을 강제하기보다는, 제국의 독특한 조

세 시스템 내에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미혼세를 활용했던 것이다.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에 술레이만 스르 베이 의원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안되었던 미혼세 법안이 결국 도입되지 못했던 과정은 조세 정책이 단순한 입법 행위를 넘어 사회 전반의 합의와 현실적 기반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언론이 미혼세 논쟁의 주요 공론장 역할을 하며 다양한 찬반 의견을 표출했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패 요인들이 부각되었음을 밝혔다.

첫째, 경제적 실효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핵심적이었다. 과세 대상 독신자 수가 예상보다 적고, 징수될 세금의 규모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은 미혼세 도입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인구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독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신생아 사망률 감소,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 실업 문제 해소 등 사회 복지 증진을 통한 자발적인 혼인 및 출산율 증가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인구 문제가 조세라는 단일 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관과 성 역할에 대한 충돌이 심화되었다. 특히 여성에게 미혼세를 부과하는 제안은 남성이 결혼을 제안하는 당시의 사회 규범과 맞물려 여성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인식되어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조세 정책이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을 강화할 때 사회적 저항에 직면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의 미혼세 논쟁이 반복적으로 부결된 역사는 강제적인 조세 정책만으로는 복잡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는 현대 사회, 특히 저출산 및 비혼 경향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오늘날 인구 문제는 고액의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시장, 과도한 양육 부담, 경직된 성 역할 기대, 그리고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등 다층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혼세와 같은 직접적이고 징벌적인 조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오히려 독신자들의 반발을 증폭시키고 위장 결혼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형평성과 윤리적 정당성 문제를 야기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젠더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오스만 제국과 튀르키예 공화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통찰은, 인구 정책이 단순히 조세라는 단일 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사회 복지, 경제적 지원, 그리고 성 평등적 가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제공, 유연한 노동 환경 조성, 남녀 공동 육아 정착, 보편적 보육 서비스 확충 등 실질적인 사회 변혁적 접근을 통해 개인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해법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김하열, “혼인 비혼 간의 차등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현법은 혼인을 ‘특별보호’하는가”, 『헌법재판연구』 제9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 2022.
- 송유미 · 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이기욱,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 · 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 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4.
- 이재희,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한 혼인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18.
- 전병우, “1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조세연구』 제19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 정래용 · 김영심, “혼인 및 동거봉양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연구”, 『상사판례 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연구, 2011.
- 조윤수, 『오스만 제국의 영광과 쇠락, 튀르키예 공화국의 자화상』, 대부동, 2022.
- 홍석구 · 김다린, “세금과 저출산 미혼세”, 『더스쿠프』 제598호, The scoop, 2024.
- 홍우형,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24.

2. 국외 문헌

- Ayhan Aktar, Economic Nationalism in Turkey : The Formative Years, 1912–1925, *Boğaziçi Journal, Review of Social and Administrative Studies* Vol. 10/1-2, Boğaziçi University, 1996.
- Enrico Rubolino, “For (Un)Love or (of) Taxes? How Taxing Bachelors Empowered Women”, December 24, 2024, Available at SSRN : <https://ssrn.com/abstract=5070333> or <http://dx.doi.org/10.2139/ssrn.5070333>(last visited July 17, 2025.).
- Erik J. Zurcher, *Turkey : A Modern History*, I.B.Tauris, 2004.
- John F. Pollard, *The Vatican and Italian Fascism, 1929 - 32 : A Study in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John Gilbert McCurdy, *Citizen bachelors : manhood and the creation of the United States*,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 Le Roy Barnet, The Attempts to Tax Bachelors in Michigan, *HSM Chronicle*, Historical Society of Michigan, 2013.
- Marjorie E. Kornhauser,, The Rhetoric of the Anti-Progressive Income Tax Movement : A Typical Male Reaction, 86 *Mich. L. Rev.* 465, The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1987.
- Maurice Keen, *Chivalry*, Yale University Press, 1984.
- Michael S. Teitelbaum and Jay M. Winter, *The Fear of Population Decline*, Academic Pr, 1985.
- OECD, *Korea's Unborn Future : Understanding Low Fertility Trends*, 2025.
- _____, *Taxing Wages 2025*, 2025.
- Richard I. Frank, Augustus' Legislation on Marriage and Children, *California Studies in Classical Antiquity* Vol. 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Şahin YEŞİLYURT, THE NIGHTMARE OF BACHELORS : DEBATES ON THE BACHELOR TAX IN THE EARLY YEARS OF THE TURKISH REPUBLIC, *Academic Review of Economics and Administrative Sciences*, Vol. Iss. 15(3), Niğde Ömer Halisdemir University, 2022.
- SEÇİL YILMAZ, “Intimate Technologies of Family Making : Birth Control Politics in Cold War Turkey”, 2024, <https://preprint.press.jhu.edu/bhm/sites/default/files/2024-09/Yilmaz.pdf>(last visited July 17, 2025).

3. 기타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결혼 · 출산 ·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2023. 3. 2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236>(검색일 : 2025. 7. 17.).
- 동아일보, “저출산—고령화의 늪…2040년 2명이 일해 노인 1명 부양해야”, 2012. 6. 2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20623/47229128/1>(검색일 : 2025. 7. 17.).
-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 2024. 8. 28. 보도자료.
- 파이낸셜 리뷰, “[역사속 경제리뷰] 독신세”, 2024. 6. 12.,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80>(검색일 : 2025. 8. 8.).

한 경, “‘미혼이 범죄인가요’…연봉 3000만원 ‘싱글 직장인’ 분통”, 2025. 5. 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77406i>(검색일 : 2025. 7. 17.).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4 결혼인식조사] 결혼은 필수? 선택? —결혼 의향,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2024. 5. 28., <https://hrcopinion.co.kr/archives/29975>(검색일 : 2025. 7. 17.).

Akşam Newspaper, 11 December 1931.

_____, 16 March 1932.

Cumhuriyet Newspaper, 20 March 1929.

_____, 21 March 1929.

_____, 16 October 1940.

_____, 16 January 1944.

Tan Newspaper, 8 April 1940.

_____, 19 April 1940.

Ulusal Birlik Newspaper, 15 January 1935.

Vakit Newspaper, 5 April 1929.

_____, 9 April 1929.

Wikipedia, “Bachelor tax”, https://en.wikipedia.org/wiki/Bachelor_tax(last visited June 30, 2025.).

<Abstract>

**A Study of the Historical Discourse and Implications of
the Bachelor Tax**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Turkish Republic —**

Lee, Chang-Kyu*

The bachelor tax (*resm-i mücerret*) has historically been discussed and implemented as a policy instrument aimed at promoting population growth.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bachelor tax,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cases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Republic of Türkiye, in order to provide critical insight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demographic challenges. In the Ottoman Empire, the bachelor tax, despite its name, was primarily designed to secure fiscal revenue rather than to encourage population growth. This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the tax rate was relatively low, the criteria for its imposition varied across regions, and, paradoxically, the tax burden often increased after marriage. Hence, the Ottoman bachelor tax functioned more as a mechanism for fiscal consolidation than as a demographic policy tool. By contrast, attempts to introduce a bachelor tax in the early Republic of Türkiye ultimately failed due to concerns over its limited economic effectiveness, recognition of the structural causes of population decline, and fears that such a tax might exacerbate tensions related to traditional values and gender roles. This case suggests that punitive and narrowly focused tax measures such as the bachelor tax have limited potential to address population issues and may even provoke social backlash, deepen economic inequality, and intensify gender conflicts. Accordingly, addressing contemporary demographic challenges requires comprehensive social reforms—ensuring housing security, improving labor market conditions, alleviating childcare burdens, and advancing gender equality—rather than relying on coercive fiscal measures. Ultimately, this

* Research Profess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Chung-Ang University

study underscores the risks of approaching population issues through simplistic tax policies and highlights the necessity of fundamental improvements to the social system.

► **Key Words** : bachelor tax, ottoman empire, turkey, population policy, low birth rate, taxation

